

1. 개정이유

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된 가운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교육정원이 한정되어 양수교육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바, 실수요자 중심 교육 운영 및 일반택시면허의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택시 운전자격 증명서류를 교육 신청시 제출(안 제5조제2항)
- 나. 일반택시면허 경력 인정기간을 3년으로 확대(안 제5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한국교통안전공단 합의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(별지)

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
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

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신청한”을 “신청하는”으로 하고, “교육 입교 시”를 “교육
신청 시”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스템에서 택시운전
자격 보유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5조제3항 중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과거 2년”을 “과거 3년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교통안전교육 신청서(제6조제1항 과정 제6조제2항 과정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	운전면허증 번호	종류	
	교육장소		

「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」 제5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 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

구비서류	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10mm×297mm 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교육신청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한 자는 <u>교육 입교 시</u>에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</p> <p>③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 접수일 부터 계산하여 과거 <u>2년</u> 동안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 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, 한국교통안전공단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으로 해당 경력사항을 확인하여</p>	<p>제5조(교육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 <u>신청하는</u> -- <u>교육 신청 시</u>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<u>다만,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스템에서 택시운전 자격 보유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3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야 한다.

제6조(교육실시 방법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육 접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2년 동안 영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.

-----.

제5조(교육실시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과거 3년 -----

-----.